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0. 11 선고 2024가단112539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8. 23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1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9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4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2. 1. 27. 주식회사 D(이하 'D'라 한다)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, 원고는 피고에게 18억 2,000만 원을 약정이자 '기준금리+2.66%', 지연이자 '대출금리+3%', 변제기 2025. 1. 27.로 정하여 대출하였다.

나. 피고는 같은 날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한도액 23억 6,600만 원으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 및 근보증하였다.

다. 원고는 2022. 1. 26. E와 사이에, F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제주시 G 목장요지 3,359㎡ 등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억 6,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그 무렵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라. D는 2023. 8. 31.경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, 2024. 2. 6. 현재 연체된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1,885,588,838원(= 원금 잔액 1,820,000,000원 + 미수이자 19,976,574원 + 연체이자 45,612,264원)이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,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채무자가 이자 등의 지급을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남은 대출원리금 전액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

된다(대출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호 바목,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등 참조)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D는 2023. 8. 31.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.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일부로서 9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4. 4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원고의 대부계 담당자의 요청으로 인감 등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, 당시 원고나 D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연대보증 체결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, 연대보증제도가 오래 전 없어진 줄 알았으며, 피고는 D의 공동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다른 공동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근보증서(갑 제2호증)에는 연대보증인 란에 ‘주식회사 D 대표이사 C’이라고 기재된 직인, 법인인감, 피고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고, 피고의 이름이 자서되어 있는 점, ②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대부담당자 요청으로 자신의 인감을 건네 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, 피고가 D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도 당시 D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, ③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1인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행위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보증계약 체결 시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되었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
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통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회하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채권에 대한 별도의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거나 그 가치가 대출원리금을 상회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,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호태